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5

2018. 9. 5.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8.9.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강태웅)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 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여대상자

1) 명예시민 : 총 15명 (남자 10명, 여자 5명) ※세부명단 별첨

가) 국적별 : 14개국 15명

네팔 1	독일 1	몽골 1	미국 2	방글라데시 1
아랍에미리트 1	앙골라 1	이집트 1	중국 1	콜롬비아 1
파키스탄 1	폴란드 1	프랑스 1	필리핀 1	

나) 분야별 : 외교 6, 경제 2, 교육 1, 문화·관광 등 기타 6

※ 서울 거주자 13명, 해외 거주자 2명

나. 추진경과

○ 2017. 6.19~ 7.14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추천서 접수 (총 18명)

○ 2017. 7.17~ 7.28 공적·거주기간 등 자료 검토 및 보완 요청

○ 2017. 8.01 2017 명예시민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추천자 18명 중 15명 선정)

다. 수여예정일

○ 2017 10. 27.(금) 「2017 명예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시라.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본 동의안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23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명예시민 선정절차 및 운영현황

- 서울시는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해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외국인이나 방문 외빈에게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하고 있음.
-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선정은 후보자 추천공고와 추천,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의회의 동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막고 명예시민증의권위를 유지하고 있음.
- 명예시민 제도가 마련된 1958년 이후¹) 현재까지 모두 94개국 797명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최근에는 2015년

^{1) 1958}년 공로시민증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1972년 근거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와 같은 명예시민증 제도로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음.

25명, 2016년 30명, 2017년 21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음(참고자료).

다.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 판단

-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공공단체와 사회단체의 대표, 30명 이상의 시민에 의해 추천받은 명예시민 후보 30명을 대상으로 시정 공로를 비롯한 공적사항과 범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공적이 미흡하거나 서울 시정과의 연관성이 부족한 7명을 제외한 23명을 최종적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수여대상에서 제외된 7명은 공적이 부족하거나 명예시민증 부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접수된 경우, 혹은 출입국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된 경우 등임.
-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수여 대상자 23명은 모두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울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으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천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음.
- 향후에도 명예시민 제도의 권위 유지를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전 검증 과정을 통해 공적 및 거주기간, 범죄사실 확인, 시정과의 연계성 등을 확인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최근 몇 년간 수여대상자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추천 상대국가(공관)와의 관계나 향후 시정 기여 가능성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명예시민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음.
- 한편,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민의 날'(10월 28일)을 앞두고 정기적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후보자 추천과 위원회 심사 등 선정 절차가 겨우 1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부실한 심사나 부적정한 대상자 선정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선정절차의 전면 개편이 필요함.
-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후보자 발굴을 위해 SNS의 적극적 활용이나 각 자치구 협조와 같이 대상자 추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라. 명예시민에 대한 사후관리

- 명예시민에게는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거나, 시정참여 기회 제공, 서울시립미술관·서울역사박물관·도시공원의 입장료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시(도)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명예시민 제도의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현재의 혜택이외에도 실질적이고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명예시민의자긍심과 권위를 높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명예시민증 수여 이후에도 협력적 네트워크 유지, 시정에 대한 관심 증진과 참여 유도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됨.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 V. 토론요지: 「없음」
-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의 안 번 호 55

제출년월일: 2018년 8월 16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제4조)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여대상자 : 총 23명(남 19명, 여 4명) ※세부명단 별첨

○ 국적별 : 18개국(※ 국가별 가나다순)

그리스	1	네팔	2	뉴질랜드	1	대만	2	러시아	1	루마니아	1
몽골	1	미국	4	이랍에가리트	1	알제리	1	영국	1	요르단	1
인도	1	중국	1	조지아	1	탄자니아	1	파키스탄	1	필리핀	1

나. 추진경과

○ 2018. 7. 2 ~ 7.27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 (총20개국 30명)

○ 2018. 7.30 ~ 8. 8 공적·거주기간 등 자료 검토 및 보완 요청

○ 2018. 8. 10 2018 명예시민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추천자 30명 중 23명 선정)

다. 향후일정(안)

○ 2018. 11. 15. 「2018 명예시민의 날, 기념식개최 및 수여

라. 관련근거

- 1) 수여대상: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 제1항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
- 2) 수여대상자 결정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4조 제1항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3) 서울시의회 동의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4조 제2항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국제교류담당관 중국팀 이현음 (☎ 2133-5267)